

『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교상 의원 외 6인

2. 제안이유

-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토대로 「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가 제정되었으나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이 폐지 되고 「주택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·정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「주택법」으로 개정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
- “한국주택은행”을 “국민은행”으로 명칭 변경
(안 제4조, 제5조,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「주택법」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토대로 「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가 제정 되었으나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이 2003년 5월 29일 「주택법」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안으로서
-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「주택법」으로 변경하고, “한국주택은행”을 은행 통합으로 변경된 명칭인 “국민은행”으로 변경 보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함.